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3. 8.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 정 이 유

국가와 민주발전을 위해 공헌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은 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에게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행정자치부(경상북도) 시세감면조례표준안 통보에 따른 개정 사항 임.

2. 주 요 골 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함(안 제2조 제2항)

3. 참 고 사 항

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7항

다. 도 세정 13400-11396 (2003. 5.23) 시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라. 도 세정 13400-11655 (2003. 6.19) 시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생 략)	①(생 략)	①(현행과 같음)	①(현행과 같음)	①(현행과 같음)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
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에우	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에우	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에우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	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	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	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
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	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	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에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에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에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	-----	-----	-----
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이외의	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이외의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증환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	증환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	증환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가유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가유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가유
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	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	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1에	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1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	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광주	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광주	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광주
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	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	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	-----)	-----)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	-----	-----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	-----	-----	-----
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	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	-----	-----	-----
제한다.	제한다.	-----	-----	-----
1.~4. (생 략)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